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(공시송달) 공고 제2021-1호

임금피크제지원금 초과 지급분 회수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에 의거 연도 중 퇴직자 연정산 결과 과오지급금이 확인되어 임금피크제지원금 회수결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「수취인 불명」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1. 1. 13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



1. 건 명 : 임금피크제지원금 「초과 지급분 회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」 요청(2차)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불임-공시송달자 명단 참조
4. 공고기간: 2021. 1. 13. ~ 1. 26.(14일간)
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구미고용센터(4층)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(F.0508-8230-0539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구미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이연주(전화 054-440-336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임금피크제지원금 초과지급분 회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2차) 관련 공시송달 명단
(공고기간 : 2021. 1. 13. ~ 1. 26.)

연번	대상자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	지원금액	회수금액	회수사유		
1	황*수	1958.1.13.	임금피크제지원금 「초과 지급분 회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」 요청(2차)	2,700,000원	2,700,000원	2018년 연정산 결과 과오급금 회수	보관기관경과 반송	(1차)경상북도 김천 시 무실7길 45 109동 505호(덕곡 동, 코아푸르나임) (1차)경상북도 김천 시 무실7길 45 109동 505호(덕곡 동, 코아푸르나임)